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그룹의 論議現況과

I. 序

知的所有權과 관련된 GATT 내의 論議는 偽造商品 交易防止문제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商標權의 適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입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國際的 論議는 주로 傳統的 知的所有權 분야에 관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WIPO, UCC 등 既存의 國際機構가 그런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GATT 내에서의 논의는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80年代에 들어와 技術進歩가 가속화되고 尖端新技術의 개발이 속출하고 産業構造가 尖端소프트화, 技術 및 知識集約化되어감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半導體칩 설계, 遺傳工學기술, 營業秘密(Trade Secret) 등과 같은 '새로운' 知的所有權 분야가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분야의 經濟的 比重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國際的으로 합의된 규범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의 知的所有權 保護,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는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相當한 時間·人力·費用을 投入하여 이룩한 각종 情報, 技術 등에 대하여 보호가 필요한 美國 등 主要先進國들은 여러 條件을 내세워 雙務間 協商을 통해 知的所有權보호의 확대압력을 加重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知的所有權문제를 GATT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로 약칭)의 새로운 교섭사항(New Issues)의 하나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論議現況과 主要爭點別 各國의 立場을 간단히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協商對應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協商目標 및 協商進行事項

가. 協商目標

U.R. 자료선언문상에 나타난 知的所有權協商의 目標은 “效果的인 知的所有權의 保護와 보호조치의 貿易障壁化 방지를 위해 GATT 規定을 明瞭化하고 적절한 경우 새로운 規定과 原則 制定을 도모하는 한편 偽造商品의 交易問題를 취급할 原則 및 規定에 관한 多者間 Frame Work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자료선언문상의 Mandate 해석과 이와 관련한 GATT의 權能을 둘러싸고 先進國과 強硬開途國(인도·브라질 등)들은 GATT가 知的所有權 문제를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Code 接近方式을 통한 協商의 조기타결을 도모하고 있고 개도국들은 자료선언문상의 Mandate 해석을 엄격히 하여 GATT가 취급할 수 있는 知的所有權의 범위를 Tokyo Round 이래의 논의를 통하여 이미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偽造商品 交易防止 Code 제정 문제에 국한시키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나. 協商進展事項

'87년 3월 제1차 협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총 10차에 걸친 公式會議을 통해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側面, 偽造商品交易, 既存國際機構와의 관계 등이 논의되었다.

同協商과정에서 美·日·EC 등의 새로운 多者間 規範制定을 위한 提案등에 따라 協議自體는 활기를 보였으나 先進國과 開途國간의 協議對象範圍나 接近方法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具體的인 進展事項은 없는 실정이다. 협상의 교착타개와 협상의 Frame 제공을 목적으

協商

對應方案

안 현 호

〈商工部 國際協力擔當官室 行政事務官〉

로 한 스위스의 중재적 提案이 제출되어 논의되었다.

同 스위스 제안은 GATT 체제내의 협상을 주장하는 개도국 입장을 비교적 폭넓게 수용하고 있는 내용이었으나 인도를 비롯한 다수 開途國은 최근 선진국의 입장이 협상의 Mandate에 위배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포함하는 개도국 공동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당분간 先進國과 開途國 일반간의 입장조정이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Ⅲ. 主要爭點事項 및 各國立場

가.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側面

美國·日本·EC 등 선진국들은 WIPO, UCC 등 既存의 國際協約으로는 知的所有權의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知的所有權에 관한 多者間 規範(Code)의 제정을 전제로 보호기준(Norm), 施行節次(Enforcement), 紛爭解決節次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선진국들은 知的所有權全般에 대한 Code 接近方式에 의거 협상을 조기타결한다는 基本立場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具體的인 부문에서는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이 중 美國의 입장이 保護側面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日本과 EC는 이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對美通商摩擦을 감안 知的所有權者의 權利와 아울러 使用者의 權利도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先進國의 提案을 정리한 결과는 表 1과 같다.

이에 대하여 開途國들로부터는 구체적인 書面提案은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開途國들은 知的所有權문제에 GATT 權能 밖의 일이며 자료선언문상의 Mandate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目 次

- I. 序
- II. 協商目標 및 協商進行事項
- III. 主要爭點事項 및 各國立場
- IV. 앞으로의 協商進行展望 및 主要豫想討議事項
- V. 對應方案

〈이번號에 全載〉

開途國들은 知的所有權 自體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側面에 대하여만 관련 GATT 條項의 확인 및 이의 明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스위스는 선진국과 開途國의 중도안으로서 知的所有權 對象範圍는 包括的으로 하되 GATT내에서의 基本規範 制定은 반대하며 現行 GATT 관련조문을 근거로 새로운 조문을 制定하는 입장이다.

나. 偽造商品 交易防止

先進國들은 知的所有權 貿易關聯側面에 대한 提案이 偽造商品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統合하여 論議하고자 주장하는 반면 開途國들은 知的所有權 貿易關聯 측면과 分離하여 별도로 論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GATT의 權能 및 他國際機構와의 關係

先進國들은 기존 WIPO 작업이나 역할이 知的所有權의 貿易障礙 제거 측면에서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GATT내에서의 知的所有權 保護에 대한 規範制定이 WIPO 등 他國際機構의 權能을 侵害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開途國들은 規範制定은 GATT 權能事項이 아니라고 하며 반대하고 있다.

IV. 앞으로의 協商進行展望 및

主要豫想討議事項

美國등 一部 先進國들이 早期協商 타결을 위해 協商力을 集中하고 있으나 開途國과 새로운 規範 마련에 대해 根本的인 시차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早速한 協商 進展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美·日·EC·

〈表 1〉 先進國 提案의 主要骨子

項 目	美 國	E C	日 本
保護對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許: 모든 技術分野 ○ 商標: 立體商標, Service mark 포함 ○ 著作權 ○ 營業秘密 ○ 半導體 칩 Layout-desig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許 ○ 商標 ○ 意匠, Model ○ 地理的 표시 ○ 原產地 표시 ○ 新變種 식물 ○ 著作權 ○ 기타 地的所有權 (半導體 Lay-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許 ○ 商標 ○ 意匠 ○ 著作權 ○ 半導體 집적회로 Lay-out
保護基準			
1) 規定方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TT에서 체결한 協定에 최소한의 保護기준 포함 ○ WIPO 등의 조치를 저해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的所有權으로 인한 貿易上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保護하기 위한 사항을 GATT Minimum Rules에 포함 ○ WIPO 조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WIPO와 GATT 조치의 상호 보완성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的所有權保護에 관한 국제 규범 마련 ○ 현행 國際條約 고려
2) 基準內容			
a. 特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許대상: 모든 技術分野 ○ 特許權: 타인의 제조·사용·판매 금지 ○ 存續期間: 出願日로부터 20년 ○ 強制實施: 제한적으로 허용 專用實施權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特許對象: 공중보전·질서에 한하여 不特許 ○ 出願등에 있어 동등·무차별 대우 ○ 特許權: 배타적 權利 ○ 存續期間: 20년 ○ 強制實施: 파리協約준수
b. 商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標정의: Service mark 포함 ○ 著名商標保護 ○ 登錄·異議申請制度: 동등대우 ○ 存續期間: 최소 5년(갱신인정) ○ 商標 Licen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協約준수 ○ 著名商標保護 ○ 出願·登錄에서의 동등·무차별대우 ○ 파리協約준수
c. 意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出願·登錄에서의 동등·무차별대우
d. 著作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複製등에 대한 배타적 權利 ○ 創作에 의하여 權利발생 ○ 保護對象: 모든 형태의 표현물 (Computer Program, Data Base 포함) ○ 存續期間: 사후 50년 ○ 權利이전등에 대한 형식적 요건부과 금지 ○ Compulsory Licensing등 著作權에 대한 제한은 베른협약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著作權배타적 權利 (베른協約규정) ○ 創作에 의하여 權利발생 ○ 保護對象: 文學·科學·美術·音樂 創作物, 제한적으로 Computer Program 保護 ○ 存續期間: 사후 50년 (베른협약)

<p>e. 營業秘密 (Trade Secre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de Secret의 도용·사용·공개 금지 ○ 政府保有 Trade Secret의 원칙적 不公開 			
<p>f. 半導體집 Layout Desig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護對象: 半導體 집적회로 Layout Design ○ 保護期間: 10년 ○ Reverse Engineering 인정 ○ Compulsory Licensing 불인정 ○ 登録制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保護對象: 半導體 집적회로 Layout ○ 保護期間: 10년 ○ Reverse Engineering 인정 ○ 登録制度 	
<p>Enforcement</p>	<p>1) 施行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行政的·司法的 절차 — 侵害物品의 수입금지 조치 포함 	<p><國經措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조치 Mechanism 마련 ○ 세관의 개입: 法院, 기타 기관과의 역할 분담 ○ 偽造商品의 輸入(수출) 규제 <p><國內措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한 국내절차 및 규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經措置 및 國內措置
<p>2) 適用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공정한 公開절차 ○ 輸入品·국내제품에 동일한 기준 적용 ○ Discovery 수단확보 ○ 규제조치 — 貿易에 근거한 규제 (Trade-Based Remedies): 販賣 등의 금지 — 地的所有權法下의 규제: 금지명령·금전배상 ○ 侵害製品的 압류·파괴 ○ 형사벌칙 	<p><國經措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的所有權·權利행사인·侵害(세관조치관련)의 정의 ○ 직권조사절차 가능 ○ 適法節次 (Due Process) ○ 기준 및 절차에 있어 내국민 대우 ○ 임시조치에 대한 단기의 시한 ○ 공탁등에 의하여 규제조치청구의 남용 방지 ○ 侵害商品의 압류·파괴 가능성 <p><國內措置></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조치와 동일한 원칙 적용 ○ 사법적 개입요건의 적용 ○ 權利행사를 위한 사법기관회부 ○ 단순·신속한 절차 ○ 적절한 손해배상·형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절차 (Due Process)의 보장 ○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 — 사법적·행정적 규제수단 ○ 사법적 제심 ○ 제재조치 (Sanctions) 	
<p>紛爭解決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GATT 절차 원용 — 地的所有權의 특수성 고려 ○ 技術專門家 그룹 및 패널회부 ○ 보복조치·양해사항·의무의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GATT 절차 적용 — 地的所有權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절차 ○ 보복조치: 혜택의 정지·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GATT 절차 원용 — 專門家の 참여 	
<p>國際協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技術協力を 위한 Mechanism 마련 ○ 情報交換등에 관한 條約국간 협력수단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情報交換·감시 등을 위하여 協力 ○ 開途國에 대한 技術支援 	

캐나다 등이 오는 12월 몬트리올 자료회의에 대비 협상단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議長도多數國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知的所有權의 執行(Enforcement) 부분에 국한한 妥協의 接近方法을 提示함으로써 일부 분야에 대한 協議는 活性化될 가능성은 있으며 조만간 일부 선진국의 의도대로 종합적인 知的所有權의 保護規範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主要先進國과 일부 개도국을 포함하는 限定된 범위내에서의 규범(Code) 제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美·日·EC 등은 商品交易에서의 開途國의 추격을 막고, 尖端技術集約商品에서의 競爭力 우위를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知的所有權 保護問題를 금번 U.R.협상의 主要課題로 삼고 있으므로 開途國 關心部分과의 Trade-Off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對應方案

현재 우리나라는 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基本的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러한 制度의 배경이 되어야 할 社會·經濟의 여건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技術水準은 아직도 模倣·改良 단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經濟成長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重化學 및 尖端産業분야의 기술은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技術使用料 지급액은 6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外國企業에 의한 國內特許出願은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86년의 경우 出願된 特許의 약 75%는 外國人에 의한 것이었으며 登錄된 外國人特許중 약 30%의 정도만이 정상적으로 實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U.R.知的所有權協商的 結果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물론 지급까지의 論議現況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에 어떤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적소유권 분야의 二國間 通商摩擦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國際規範을 제정하는데 동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知的所有權 保護制度는 '87년 7월에 획기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이미 先進國 水準에 도달하고 있다. 규범(Norm) 측면만을 고려할때 일부 부문에 아직 미진한 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협상결과에

따라 급격히 제도를 개편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一部 提案內容中에는 貿易 및 技術發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향후협상에서는 협상진행경과에 따라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基本立場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무역관련 知的所有權 협상에는 적극 참여하여 가능한 많은 협상참가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협상단계를 위하여 先·開途國의 의견대립해소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知的所有權에 관한 包括的인 基本規範制定을 목표로 하는 接近方法은 자료선언의 협상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대하며 知的所有權의 貿易關聯側面과 偽造商品 交易問題의 분리협상을 지지한다.

둘째, GATT내 규정될 知的所有權 관련규범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국제규범은 條約국 및 기존 國際機構간의 合意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2) 知的所有權者의 權利와 함께 使用者의 權利도 함께 보호되어야 하며, 3) 保護基準는 “최소한의 기준을 선정하고 이 기준에 일치하는 한 各國의 産業技術단계에 적합한 정책적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하며, 4) 知的所有權의 보호강화에 따른 새로운 貿易障壁의 創出을 억제할 制度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施行部門에 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언급되어야 한다. 1) 과도한 施行節次 및 救濟手段이 合法的 交易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Safeguards의 마련, 2) 각 條約국의 民事上·刑事上·行政上 節次는 각 條約국의 法的 傳統·社會·文化的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3) 세관에서의 規制措置가 각국의 恣意的 운영에 따른 비관세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4) 다양한 성격의 모든 知的所有權에 대한 동일한 施行節次의 적용은 피하여야 한다.

넷째, 雙務間 또는 一方的 紛爭解決方式은 지양되어야 하며, 多者間 紛爭解決節次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적시되어야 한다. 1) 숙련된 전문가를 구비한 調整機構, 2) 객관적 評定을 위한 패널설치, 3) 法的 拘束力을 갖는 意思決定機構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4) 勸告事項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8>

발 명 은 국 력 이 다!